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06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이성운
김원이·박수현·윤준병
박지원·이개호·김영진
김영배·전종덕·서미화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
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
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조의3(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3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u> <u>2.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③ 해양수산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8년-----

-----.

③ -----

-----대통령령-----.